

Ocean Policy Research

Vol. 9, No. 2, 1994

韓國海洋研究所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海 洋 政 策 研 究
Ocean Policy Research

Vol. 9 No. 2

1994 Winter

目 次

卷頭言

- 박춘호 UN해양법협약 발효와 이에 따른 우리의 준비자세는 217

特 輯

- | | | |
|-----|--|-----|
| 박춘호 | 한반도 주변 대륙붕 경계문제의 현황:
UN해양법협약 발효에 즈음하여 | 219 |
| 박성쾌 | 유엔해양법협약 발효와 원양어업 대책 | 231 |
| 홍승용 | 유엔심해저 광업체제의 변화와 평가 | 271 |
| 이상돈 | 유엔해양법협약과 해양환경보호 | 295 |

研究論文

- | | | |
|--------|--------------------------------|-----|
| 장영태 | 한중 해운항만분야의 협력현황과 과제: TCR을 중심으로 | 309 |
| 유시웅 |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임해공단 진출전략에 관한 연구 | 333 |
| 이홍동김성귀 | 한국인의 중국관광현황과 행태에 관한 연구 | 367 |

研究 NOTE

- | | | |
|-----|--|-----|
| 于慶東 | The Situation and Countermeasures of Artificial
Ocean Disasters in Shandong | 391 |
| 박필성 | 전자해도 개발을 위한 연구 방향 | 399 |

資 料

- | | | |
|-----|------------------------------------|-----|
| I. | 유엔해양법협약 제11장 이행협정 | 419 |
| II. |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선포현황 등 최근의 해양정책 관련자료 | 453 |

卷 頭 言

UN해양법협약 발효와 이에 따른 우리의 준비자세는

朴 春 浩

法博·高麗大 法大 教授

1982년, 12월 10일에 자마이카에서 서명된 UN해양법협약은 지난 11월 16일에 마침내 발효했다. 서명에서 발효까지 무려 12년이 소요된 것은 서방선진국들이 이 협약의 심해저 개발에 관한 조항에 계속 반대하여 서명까지도 거부해 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UN사무총장의 끈질긴 노력끝에 서방선진국들이 반대했던 심해저 조항은 하나의 추가협정의 형식으로 타협이 되어 지난 7월말에 합의 되었다. 즉, UN해양법협약은 본 협정 및 심해저 조항 이행을 위한 추가협정의 2개 문건으로 구성된 셈이다.

이 협정은 본문 320조 및 각종 부속문건 120여개조로 구성된 '바다의 헌법'이다. 1967년 UN총회에서 몰타의 Arbid Pardo대사가 일부 심해저차원의 국제 관리를 주장하여 그 해 총회가 해저위원회를 설치하여 해양법 문제의 현실화를 착수했을 때부터 기산하면 이 협약은 UN이 15년의 시간을 투입하여 성취한 가장 큰 입법 작업으로 자랑할 만하다.

현재의 비준국수는 69국에 지나지 않으나 이들의 대다수는 군소 후진국들인데 지난 10월에 독일과 호주가 비준했다. 이제 서방선진국들도 각기 국내 절차가 끝나는 대로 비준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이 비준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비준하지 않았으나 그에 대한 준비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전한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나라의 비준과 관련하여 몇가지 점을 간단히 논한다.

우리나라가 해양법협약을 비준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점은 국내적으로는 해양 관계법령의 정비문제이다. 해양법무는 정부내의 12개 부처에 흩어져 있고 관계법령은 60개 이상이나 되니 국내법 정비작업이 만만치 않다. 물론 관계법

령의 정비가 선행되지 않으면 비준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관계법령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영해법인데 외국군용선박 등이 우리나라의 영해를 통과하려면 3일전에 통고해야 한다는 조항은 협약과는 상반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반드시 개정한다해도 UN협약비준 이전에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한편, 협약비준이 지연될 경우에 우리나라는 몇가지 불이익을 받기 마련이다. 첫째,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프랑스, 러시아, 인도, 동유럽연합 등 7개 심해저개발 선행투자국의 하나로서, 중서부 태평양에 15만km²의 심해저 광구를 UN으로부터 승인 받았는데 이것은 협약비준을 전제로 한 것이다. 심해저개발에 관한 중요한 정책은 협약당사국회의에서 결정되는데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여기에 고작 옵저버로밖에 참가할 수 없다.

둘째, 이 협약에는 해양관계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해양법 재판소' 설립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1995년 5월에 독일의 함부르크에 개설된다. 그래서 21명의 재판관을 선거하는데 협약비준국들만이 후보를 추천할 수 있고 선거에 참가할 수 있으므로 비준의 지연은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거는 1996년 8월 1일이므로 아직 시간은 있어 보이나, 이미 예상 후보자들이 상당히 움직이고 있어서 후보추천의 지연으로 그만큼 불리한 입장에 놓이기 마련이다.

UN협약의 발효를 계기로 세계의 해양개발은 1970년대를 방불케 하는 활기를 띠게 되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해양개발의 현위치와 미래를 생각해 보면 UN협약 비준이전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즉 우리나라 일반국민의 해양에 대한 관심도가 문제이다.

우리민족은 바다를 개척하여 국력을 길러 본 역사가 드문 편이다. 이 점은 해양을 제패하여 세계를 제패했던 서양민족들의 경우와는 몹시 대조적이다. 물론 오랫동안 중국과의 종속적인 관계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인 해외의 타민족들과 거래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도 극히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해양개발에 관한 일반 국민의 발상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바다의 필요성, 중요성 그리고 생산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또 한가지 중요한 정책으로서는 바다를 관장하는 기구에 관한 것이다. 정부 내의 12개 부처에 분산된 해양관계 업무가 능률적일 수는 없다. 이제 통합된 기구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므로 과감한 실천만이 남아 있다. UN 해양법협약의 비준을 계기로 바다에 관한 우리의 인식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